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무상교육 대상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출생자로 인지된 외국인 유아 추가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9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무상교육 대상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출생자로 인지된 외국인 유아 추가.....	3
[참고자료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흐름도 (법무부)	11
[참고자료 2]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안) 사업 개요(교육부)	12
[참고자료 3] 2026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일부(경기도)	14
[참고자료 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유아 대상 유아학비 지원 관련 조례(서울시)	16
[참고자료 5]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례규정 입법례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진숙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7. 10.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그런데 혼인 중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반면,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모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유아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무상교육 대상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출생자로 인지된 외국인 유아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무상교육 대상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출생자로 인지된 외국인 유아를 추가함으로써 무상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혼인외의 다문화 출생아동에게도 무상교육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4조의2(외국 국적 혼인 외의 출생자의 무상교육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법」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조정·화해를 포함한다)을 받은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을 실시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4조¹⁾에서는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정의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²⁾에서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 비중이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1)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11조(입학)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 3. (생략)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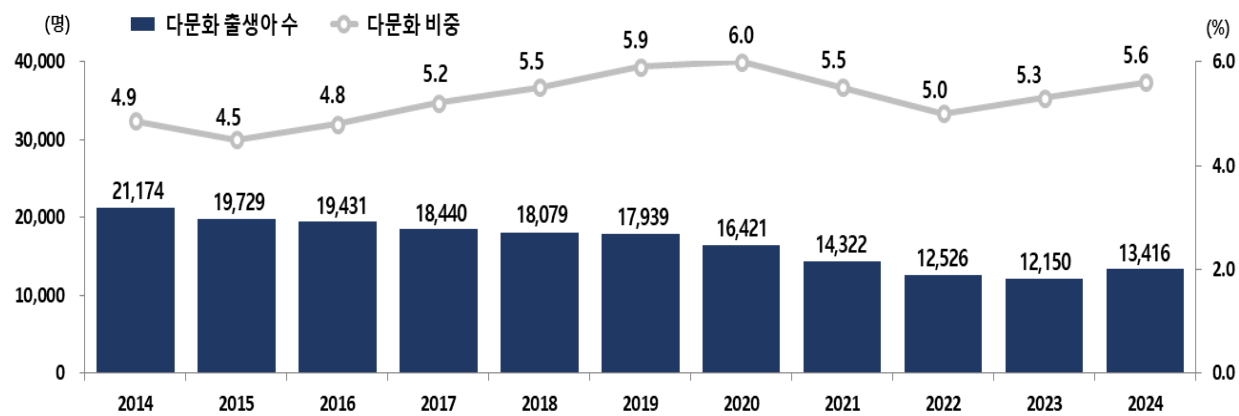
5. ~ 6. (생략)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다문화 출생에서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14~2024년)]



*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5. 11. 6)

[다문화 유형별 출생아 비중(2014~2024년)]

(단위: %)				
	계	외국인 모 ¹⁾	외국인 부 ²⁾	귀화자 ³⁾
2014	100.0	67.1	14.9	18.1
2015	100.0	65.2	15.2	19.6
2016	100.0	64.1	15.6	20.3
2017	100.0	63.6	15.5	21.0
2018	100.0	62.8	15.3	21.9
2019	100.0	64.2	13.4	22.3
2020	100.0	67.0	13.2	19.9
2021	100.0	65.1	15.4	19.4
2022	100.0	61.0	20.0	19.0
2023	100.0	59.3	21.9	18.8
2024	100.0	61.0	21.9	17.1

1) 출생기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부터의 출생

2) 외국인 부와 출생기준 한국인 모로부터의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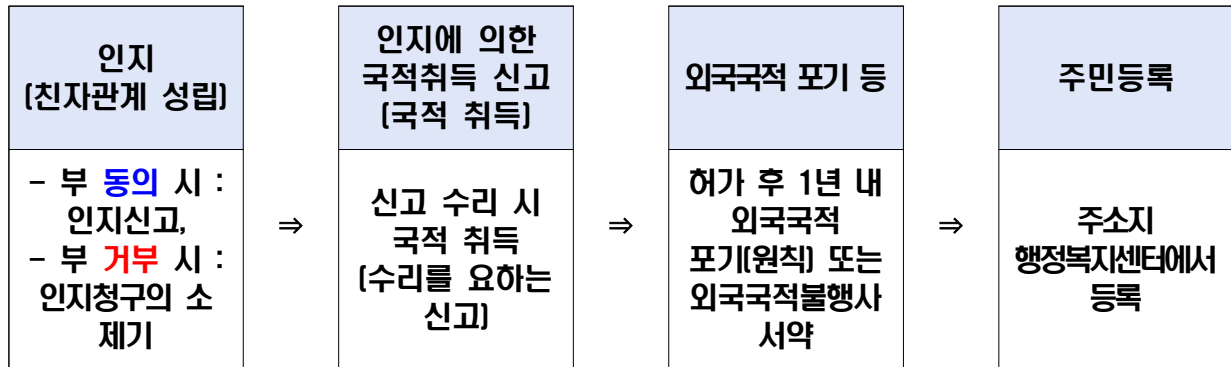
3) 부와 모 중 한쪽이 귀화자 또는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

*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5. 11. 6)

□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출생자 중에서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다른 다문화 출생자와 달리 출생에 따라 한국 국적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인

지3) 및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4)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부터의 혼인의 출생자 국적 취득 절차]



3)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4)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로 인해 법률혼 관계가 아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출생자는 국적취득 절차 이후부터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국적 취득 절차에 상당한 시일(국적취득 신고서 기준 6개월⁵⁾)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유아는 혼인외의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다문화 출생자와 달리 상당 기간 무상교육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이에 개정안은 무상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혼인외의 다문화 출생아동에 대해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인지 시점”부터 “국적취득 시점”까지의 공백 기간에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권리를 균등히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무상교육 대상에 국적선택 여부가 불확실한 다문화 출생 외국 유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원칙과의 정합성 및 타 외국인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률혼 관계가 아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출생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외국인 지위에 있고, 국적취득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 그 불확실성이 큰바,

개정안과 같이 국적선택에 대한 기대가능성만으로 외국 국적인 다

5)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적취득 신고서

국적취득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처리기간	6개월
------	-----	-----	-----	------	-----

문화 출생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적용할 경우 ①사회보장수급권을 “국민”의 권리로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원칙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②타 외국인 유아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특례규정을 통해 국내에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부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고는 있으나, 영유아 또는 아동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제도는 없는 상황임. <참고자료 5: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례규정 입법례>

둘째, 개정안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 요건 중 부모의 국적 요건에 대한 시점을 “출생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 개정 취지 및 관련 제도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교육 대상 요건 중 부모의 국적 요건에 대한 시점이 “출생 시점”이 아닌 “인지 시점”으로 해석됨에 따라 유아 출생 당시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태어난 유아를 대상으로 하려는 개정 취지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국적법」에 따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상⁶⁾과도 괴리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셋째, 법문의 간결성 및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 측면에서 「국적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인지” 관련 입법례를 고려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추가로, 외국인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 관한 타 법률 안들⁷⁾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다수 계류 중에 있어, 추후 법률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유아 무상교육 대상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출생자로 인지된 외국 국적 유아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①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유아 무상교육 대상을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3~5세 유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등)에서도 지원대상을 대한민국 국적 유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③ 현재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지원 조례」 등에 따라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적 유아와 동일하게 무상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시·도교육청(대구, 강원)

- (대구)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 (강원) 정상적인 가정을 구성하거나 법적 의무를 완수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 국적의 자녀에게 무상교육과 같은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형평성과 실질적 공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임.

7) 무상보육(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안(의안번호 2201907) 및 전진숙의원안(의안번호 2219896)
무상교육(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안(의안번호 2217794)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무상교육 적용시점에 대해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례를 두어 그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87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흐름도

(국적법 제3조)

1 인지신고

가족관계등록관서

- 법률혼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 국민인 부의 기본증명서에 자녀 인지사실 기재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
※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안내

3 신고 수리

출입국·외국인관서

- 친자관계(유전자 검사) 등 요건 확인 후 신고 수리

4 고시 및 통보

출입국·외국인관서

- 관보고시 및 본인 통지
-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생성)

5 외국국적 포기 등

출입국·외국인관서

- 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국적법」 제10조에 규정
 - ※ 외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국적취득 후 지체 없이(3개월 내)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1년 내에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6 주민등록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 추진배경 및 목적

- (유아학비)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
-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에 따라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보육료 단계적*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5세(‘24년) → 4~5세(‘25년) → 3~5세(‘26년)

□ 2026년 지원내용

(단위 : 원)

구분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총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100,000	50,000	50,000	200,000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280,000	70,000	50,000	400,000

※ 위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외에 소득요건 등 조건에 따라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 **세부 지원내용** ('26.3.1.부터 적용)

○ 유아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5세	2020.1.1.~2020.12.31.	100,000	280,000	280,000
	4세	2021.1.1.~2021.12.31.			
	3세	2022.1.1.~2023.2.28.			
방과후 과정비	3~5세	2020.1.1.~2023.2.28.	50,000	70,000	70,000

※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1월 예정)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의한 미숙아인 경우, 생후 연령에서 조 기출생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및 재원 가능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200,000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3~5세	2020.1.1.~2023.2.2.	50,000	50,000	50,0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비고19에 따른 '26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외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

I 지원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 경기도 관내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II 지원근거

-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 11. 20.)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2(사업)

III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2026. 3. 1.부터 적용
 ○ 외국인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금액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금액(원/월)	
			공립	사립
유아학비 (유치원)	5세	2020. 1. 1. ~ 2020. 12. 31.	100,000	280,000
	4세	2021. 1. 1. ~ 2021. 12. 31.		
	3세	2022. 1. 1. ~ 2023. 2. 28.		
방과후과정비	3~5세	2020. 1. 1. ~ 2023. 2. 28.	50,000	70,000

※ '26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6-2호, 2026. 1. 21.)

※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및 정산은 연도별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지원금 산정방식을
 준용함

❖ 공립유치원 안내사항 ❖

- ☑ 입학금과 수업료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집행
 - ☑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우선 집행**
 - ☑ 시설비 및 공공요금 등 유치원 운영을 위한 간접교육비로 집행 불가
 - ☑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급식비 100% 지원으로 급식비 집행 불가
- ※ 단, 수익자부담으로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유아학비로 급식비 집행 가능
- ※ 수업료 징수금액 및 납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재무관리과)에 문의(「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참고)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입학 시 방문하여 신청
-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 (단,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같음)
- 지원금 지급: 유아학비 신청에 따라 교육지원청 → 유치원 입금

❖ 외국인 유아학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

- ☑ 외국인 유아도 반드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출결관리
- ☑ 정산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출결사항을 기준으로 진행
- ☑ 재정여건상 신규 신청이 중단될 수 있음에 유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4. 5. 23.] [서울특별시조례 제9208호, 2024. 5.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학생들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0., 2024.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3.3.>

1. “다문화교육”이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3.3., 2024.5.23.>
2.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3.3., 2024.3.20.>
 -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나.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 <삭제><2022.3.3.>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3.20.>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유아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7.22.]

제4조 ~ 제13조 (생략)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필요한 기타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 ⑩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